

제주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2020가단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8. 24.

판 결 선 고 2020.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 9. 17.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채업을 하는 피고에게 지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어 돈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4.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33,33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위 지인들에게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33,33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4.경부터 2015. 8. 22.경까지 합계 33,3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원고의 소개로 피고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가 위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거니와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점이 납득할 정도로 해명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